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433호
- 나.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21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1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2. 제안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 운영 횟수를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2021.8.10. 개정)에 따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서울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어야 하며, 서적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할 것과,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도록 하는 등의 ‘지역서점 요건’을 반영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지역서점 현황

- 서울시 내 지역서점 수는 2003년 통계 수집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서울시의회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이후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면서 2021년에는 이례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서울시 서점 수 현황(2003~2021) 》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서점 수 (개소)	547	533	505	428	423	412	403	343	324	492
증감률 (%)	-	△2.6	△5.3	△15.2	△1.2	△2.6	△2.2	△14.9	△5.5	51.9

※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22년 한국서점편람」

※ 전국 서점 수: '20년('19년 통계) 2,320개소에서 '22년('21년 통계) 2,528개소로 소폭(0.9%) 증가

다. 조문별 주요 내용

(1) ‘지역서점’의 정의(안 제2조)

-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이라는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임.
- 이는 ‘지역서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관계 법령과 동일한 용어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2) 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안 제10조제1항)

-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서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분기별 한 차례 이상’에서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에 따라 ‘분기별 한 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연간 네 차례 이상의 개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네 차례 개최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 위원회 개최 현황 (2016~2022) 》

(단위: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최 수	1	3	3	3	2	4	3
개최 방법	대면	대면	대면	대면	서면	서면3, 화상1	서면1, 대면2

※ 2016. 9. 23.(3분기) 지역서점위원회 첫 개최 이후 같은 해 4분기 회의는 미개최

- 문화본부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위원회가 가장 많은 개최 횟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기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어 회의 운영상 재량의 여지가 매우 적은 편임.

《 문화본부 소관 위원회 비교 》

(2022. 10. 기준)

	위원회명	조례명	개최 횟수
1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재량 등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재량 등
3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재량 등
4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재량 등
5	축제위원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 2회
6	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연 2회
7	국악진흥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반기별 1회(연 2회)
8	역사도시 서울위원회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재량 등
9	문화재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재량 등
10	무형문화재위원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재량 등
11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재량 등
12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재량 등
13	지역서점위원회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분기별 1회(연 4회)
14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연 1회
15	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재량 등
16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재량 등

※ 재량 등: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 요구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 개최

- 또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설치되어온 서울시 내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정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1년에 두 차례 이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됨.

의안번호
043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기덕 의원	2023. 1. 25.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운영 횟수를 분기별 한 차례에서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8.10.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공포 ○ '22.02.11.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지식문화과	팀장 최정민(☎2133-0201)	담당 이주리(☎2133-0225)